

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 통보서

공사명					
수급인	상호 및 대표자				
	영업소 소재지				
	하도급 사유				
하수급인					
하수급인	상호 및 대표자				
	업종 및 등록번호				
	영업소 소재지				
	수급인에게 협력업자로 등록된 연월일				
공사의 종류					
하도급내용(을)		도급액(① 하도급 부분): 하도급(예정)금액: ② 하도급률:			
하도급내용(예정·변경)일		하도급 공사기간	착공(예정): 준공(예정):		
하도급 내용	사회보험료	직접노무비 또는 노무비	반영 요율	반영금액	부담방법
	③ 고용보험				[] 일괄 [] 개별
	④ 산재재해보상보험				[] 일괄 [] 개별
	⑤ 국민연금보험				
	⑥ 국민건강보험				
	⑦ 노인장기요양보험				
	⑧ 퇴직공제부금				[] 일괄 [] 개별
	*③~⑧에서 보험료를 일괄 부담할 경우에는 부담방법 중 일괄란에만 표시합니다.				

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9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건설공사의 하도급계약내용을 통보합니다.

년 월 일

수급인

(서명 또는 인)

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
------	-------

첨부서류	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1. 하도급계약서(변경계약서를 포함하고, 특수조건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을 포함합니다) 사본2. 공사량(규모) · 공사단가 및 공사금액 등이 분명하게 적힌 공사내역서3. 예정공정표4.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그 증빙서류5. 현장설명서(현장설명을 실시한 경우만 해당합니다)6. 공동도급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간에 체결한 협정서 사본. 다만, 별지 제17호서식의 건설공사대장에 해당 협정서의 내용을 첨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.
------	---

유의사항

- ① 하도급 부분 금액은 하도급하려는 공사 부분에 대하여 수급인의 계약단가(직접 · 간접 노무비, 재료비 및 경비를 포함합니다)를 기준으로 산출한 금액에 일반관리비, 이윤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하며, 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자재의 비용과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34조제3항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드는 금액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수급인이 부담하는 금액은 제외합니다.
- ② 하도급률은 하도급 계약금액을 하도급 부분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말합니다.

처리절차

이 통보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